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1. 2 선고 2021가단1215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문옥, 양선화, 유병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바울

피고A

변론 종결2022. 10. 5.

판결 선고2022. 11. 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체결된 2021. 10. 6.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21. 10. 7. 접수 제100062호로 마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년부터 1999년경까지 C 주식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에 B은 그 중 3차 보증계약에 대하여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C 주식회사가 연체한 대출금 등을 관련 은행에 지급하여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C 주식회사와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858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6. 10. 2.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G, H, B은 연대하여 1,448,876,711원 및 그 중 1,395,682,19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4. 10. 9.부터 2006. 5. 1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B은 친오빠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0. 6.자 증여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21. 10. 7.자 접수 제100062호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B은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포함한 27,457,86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에게 원금 1,448,876,71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천안시 동남구 I 답 599평 중 1/5지분	9,702,000	갑3-1, 갑4-1 1980㎡×24,500원×1/5지분
2	천안시 동남구 J 대 122㎡ 중 1/5지분	1,998,360	갑3-2, 4-2 122㎡×81,900원×1/5지분
3	천안시 동남구 K 대 955㎡ 중 1/5지분 (이 사건 부동산)	15,757,500	갑2, 갑4-3 955㎡×82,500원×1/5지분
	합계	27,457,8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21. 10. 7. 접수 제100062호로 마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구하였으나, 이는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해야 할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확장)변경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행해진 이상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부친인 망 L를 생전에 부양하여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피고가 취득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B를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를 마쳤다. 그런데, 안산시 단원구에서 지방세 체납 등을 이유로 망 L의 상속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속등기를 촉탁하였고, 어쩔 수 없이 피고가 B의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로 그 지분을 원상회복시킨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 10. 8. C 주식회사의 연체 대출금 등을 대위변제하였고, B와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L는 그 이후인 2005. 1. 27.에 사망하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그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이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마쳐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불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설령, 망 L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피고가 취득하는 내용으로 상속개시 당시에

협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약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요식행위인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최재원

별지